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24 자 2019재나127 결정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4다25586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6. 14 자 2024재나50027 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24 자 2019재나127 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9나31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2. 19 선고 2018가소24049 판결

전문

원고(재심 원고) A

피고(재심 피고) B

변론 종결 2020. 11. 26

판결선 고 2020. 12. 24

재심대상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9나310 판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재심원고,이하'원고'라고 한다)에게 1,057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차임,원상회복비용,구조물설치 철거비용,재물손괴비용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소24049호), 위 법원은 2018.12. 19. 원고의 소 중 차임, 원상회복비용,구조물설치 철거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항소심법원은 2019. 6. 13. 원 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를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9나310호).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관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상고심법원에서 2019. 8. 29.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대법원 2019다15793호),이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충분한 입증이 마쳐졌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항소심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재심대상판결로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위법이 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재심사유에해당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청구원인으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 · 증명하여야 하고,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재다518판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재다873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한편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이를 주장하였다가 기각된 경우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재심사유의 구체적 내용은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에서 원고가 상고이유서 및 준비서면을 통하여 주장하였다가 기각된 내용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김문성 판사 김혜선 판사 박세황